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기획단설치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위치) 기획단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 3 조(업무)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2. 서남권시장개설·운영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추진 <p>제 4 조(공무원)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 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요원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위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요원에 대한 각종 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</p>	<p>보호,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2 조(구성 및 설립운영) ①의정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 <p>③의정회의 설립,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 3 조를 제 3 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3 조(사업과 보조금의 교부) ①의정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 2.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.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문제, 환경문제, 교통문제 연구 4. 월간 “의정” 발간 5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p>②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를 제 9 조로 하고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8 조(운영규정)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 “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”로 한다.</p> <p>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의정회(이하 “의정회”라 한다)의 설립과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4.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條例中改正條例案(白南善議員 外 19人 發議) 15. 서울特別市流通産業紛爭調整委員會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16.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5時 51分)</p>